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임시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록 제 1 차

충청광역연합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9월 25일 (목) 10시 00분

장 소 충청광역연합의회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상정된 안건

-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91) 1면

(10시 11분 개의)

○ **위원장 김광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박미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91)

(10시 12분)

○ **위원장 김광운**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미옥 의원님께서 지금 앉아계신 의석에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미옥 의원** 존경하는 김광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박미옥 의원입니

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안 제5조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을 위해 비용 지원이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년농어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 확보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광운** 박미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형령 전문위원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형령** 전문위원 이형령입니다.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8일 박미옥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2025년 9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6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6쪽부터 8쪽까지의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은 국민의 먹거리와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근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청년 농어업인은 물론이고 충청권 4개 시도의 청년 농업인 비율조차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 유입의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청년들은 농지 확보의 어려움, 높은 초기 투자비 부담, 열악한 정주여건 등으로 농업을 기피하고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자금, 네트워크 구축, 기술 지원 등 다양한 지원근거를 마련해 청년 농어업인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정착을 촉진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제도가 정착이 된 이후에는 현 각 지자체 단위의 청년농 소모임은 충청광역연합 차원에서 정례 협의체로 제도화하여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며 정책간담회, 공동 브랜드 및 판로 개발 등으로 기능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청년농어업인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니라 농어업의 미

래 핵심주체로 인식하고 그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충청광역연합의 구성 지자체인 대전, 세종, 충북, 충남 4개 시도에서도 기제정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청년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있기에 본 조례안의 안 제4조 지원계획과 안 제5조 지원사업 등이 중복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충청광역연합장은 조례 시행 전에 4개 시도와의 업무 협의와 조정 등으로 조례의 적용 범위, 지원 내용 등의 중복여부 확인을 통해 광역연합 차원의 정책을 보완하거나 연계 기능을 강화하고 중복 지원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 **위원장 김광운** 이형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연합사무처장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합사무처장 이수현**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에 따라서 앞으로 저희가 농업분야의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광운** 연합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광역연합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회 충청광역연합의회 임시회 제1차 초광역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9분 산회)

○출석 위원(6인)

김광운 박미옥 박주화 안치영 이옥규 이한영

○청가 위원(2인)

김응규 박란희

○출석 전문위원

전 문 위 원 이형령

○출석 공무원

〈충청광역연합〉

사 무 처 장 이수현

초광역건설환경과장 오세준